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90호
2.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
3. 발의일자 : 2020. 5. 21.
4. 회부일자 : 2020. 5. 29.

II. 제안이유

-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학교체육시설 구축, 학생 체육활동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 기초체력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2.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4.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5. 학교체육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학교체육 내실화, 체육시설 확보, 여학생·장애학생 체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6.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와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9조).
7.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체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
8.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21조).
9. 학교체육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화 등을 위한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제23조).
10. 서울특별시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체육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11.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학교, 학생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체육진흥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타사항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90호로 발의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체육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2017년 OECD가 발표한 「PISA¹⁾ 2015결과」에 따르면 학교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업성취도 및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면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시험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비율(2.9%p)이 낮고, 학교에서 아웃사이드로 여기는 비율(6.7%P), 무단결석 비율(3%P),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 비율(2.2%P)도 낮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2016년 미국의 “체육수업시간과 수학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²⁾ 학교체육은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과 한계를 키우고 집중력과 자신감을 강화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교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OECD가 실시하는 각국 학생들의 교육수준 평가를 위한 시험

2) 일주일에 평균 90분 이상 체육수업을 한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렇듯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체육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학생 건강은 물론 학업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사회성 등 스포츠와 학교체육의 통합적 효과에 주목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 1] OECD 주요 선진국의 학교체육교육 비율(필수학습시간 대비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³⁾

구분	한국	OECD 주요 국가 중 PISA 상위권 국가							평균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초	7	11	11	11	10	14	13	10	11.4
중	8	9	9	11	10	12	12	9	10.2

- 그러나 이러한 체육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입시위주의 지식주입교육에 집중한 나머지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는바,

체육교과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고학년에 대한 체육 수업 시간의 축소 경향, 여학생 및 장애학생의 체육교과 소외, 체계적인 체육수업을 위한 예산·자원의 부족 등은 학교체육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⁴⁾ 중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을 목

3) OECD 발표(2016.10월)

4) 주요 추진 과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 내실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20년에는 초 4,5,6학년 확대 적용, 초등(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및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협업체계 구축 및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표로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체육교원 전문성 신장, 자율체육 기반조성, 여학생 체육활성화, 학생건강 체력 증진, 서울형 학생운동 부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⁵⁾.

- 이와 같이 학교체육교육은 운동욕구 실현 및 체력 증진, 운동 소양 함양 등 교과자체의 목표 달성은 물론 타 교과의 성취를 증진하는 학제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체육활동을 통해 활동적 생활양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체육 내실화, 체육시설의 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재정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학교체육 내실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학교 체육시설 확보 및 자율체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에 관한

5)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체육건강문화예술과-3071, 2020.2.24.)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는 학교 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학교체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연구학교 지정·운영,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및 예산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의 종류를 체육교재, 체력측정, 육상운동, 구기운동, 체조운동, 그 밖의 운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6) 따른 “각급 학교 교구 기준(체육과)”을 고시하여7) 각급 학교의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을 세부적(학교당, 학년당, 학급당, 실당, 학생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과 교육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각급 학교 교구 기준)」에 따른 학교체육 시설 및 교재·교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 비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각급 학교 교구 기준(체육과)					
구분	종류	급별	영역	교구종목	활동예시	최소소요기준	
체육교재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	초	공통	줄긋기 줄	육상	학교당 2	
체력측정	초시계, 줄자, 고깔봉, 반환점,			배턴	이어달리기	4학생당 1	
육상운동	스타팅블록, 허들, 신호총,		건강	라바콘/반환점	육상	학교당 각 15	
				디지털 악력계	근력 측정	학교당 4	
구기운동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도전	스타팅 블록	단거리달리기	8명당 1개	
				허들	허들	학교당 각 10	
체조운동	리듬체조용 줄, 고무공, 후꾸,		경쟁	탱탱볼	피구	1학생당 1	
				축구공	축구, 풋살	2학생당 1	
그 밖의 운동	줄다리기용 줄, 제기, 굴렁쇠,		⋮	⋮	⋮	⋮	⋮

※ “각급 학교 교구기준(체육과)”은 각급 학교 중 초등학교 영역별 2개의 교구종목만 예시로 작성하였음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8조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각급 학교 교구 기준(체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9-20호, 2019.12.12.]

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에 관한 의견(안 제9조)

○ 안 제9조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제5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9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선호 종목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학교스포츠클럽의 개설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교육부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해당 학교의 장은 교내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율의 학교스포츠클럽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여학생들의 체육교과 소외, 소극적 참여 등이 학교체육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내실 있는 수요조사를 통해 여학생들이 희망하는 종목의 체육프로그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의견(안 제11조 ~ 안 제19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2016.12.29.)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는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학교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동 조례안에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동 조례안과 함께 발의된 상태입니다.

5) 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의견(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각종 대회 운영, 학생선수 지원, 연수 운영, 자료 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20조의 학교체육진흥센터는 학교체육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학교체육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체육진흥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6995, 2020.5.29.).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 체육진흥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63호, 2017. 4. 28, 일부개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학교 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